

 		<h1>설명자료</h1> <p>2019. 10. 14.(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
담당과	지방교육재정과	담당자	과 장 이강복 (☎ 044-203-6199) 사무관 연수진 (☎ 044-203-6529)

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한겨레(최원형기자) / ' 19. 10. 14.(월)
- 제목 : 작은 학교 227곳 없앤 대가로 12개 교육청 1조 662억 받았다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□ 학교 설치·이전·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*이며 시·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(통·폐합)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
*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제5호

○ 다만, 학교 통·폐합 시 필요한 조치*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·폐합에 대한 인센티브**를 교부하고 있습니다.

* 인근 학교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, 통학버스 운영 등

** 학교 통·폐합 관련 인센티브 교부 기준(단위 : 억원)

구분	본교 폐지	분교장		학교신설 대체 이전	통합운영 학교
		개편	폐지		
초	60명 이하 : 40 61-120명 : 50 120명초과 : 60	5	20명이하 : 20 21-40명 : 30 40명초과 : 40	60명 이하 : 30 61-120명 : 40 120명초과 : 50	· 시설폐쇄 30 · 미폐쇄(공동이용) 10
중고	60명 이하 : 90 61-120명 : 100 120명초과 : 110		60명 이하 : 60 61-120명 : 70 120명초과 : 80		

-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'적정규모학교 육성'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
-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